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95
------	------

2018년 4월 9일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2월 22일, 맹진영 의원 외 10명

나. 회부일자 : 2018년 2월 26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80회 임시회】

-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18.4.9)상정,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토론, 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맹진영 의원)

1. 제안이유

- 조례에 인용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

행령」이 폐지됨에 따라 근거 법령을 최신화하고 중소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전에 관내 중소기업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여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중소기업의 육성 계획의 현실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폐지됨에 따라 인용법령에서 삭제함(안 제1조)
- 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전에 관내 중소기업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7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병국)

가. 개정안의 개요

- 본 개정안은 서울시가 중소기업지원시책과 중소기업육성계획의 수립 전에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지원사업의 현장성과 현실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나. 중소기업시책과 중소기업육성계획의 수립의무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는 정부에게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을 고려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는 중소기업벤처부의 기본지침에 따라 시·도지사가 매년 다음 연도의 중소기업육성계획을 12월 31일까지 수립하고 이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음.
- 또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8에서 시·도지사가 매년 육성계획의 실적을 분석하고 다음 해 2월말까지 그 분석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서울시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기본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중소기업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 실적에 대한 분

석 결과를 추가하여 이를 매년 상반기 중에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고 있음.

다.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현황

- 「중소기업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활동현황, 자금, 인력 및 경영 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중소기업 일반 현황과 건설업, 서비스업, 제조업 등 분야별로 표본을 추출하고 모수 추정(parameter estimation)의 방식을 통하여 실시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매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세부사항은 붙임자료 2 참고).
- 한편, 통계청은 종사자가 1인 이상인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전국사업체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사업체조사 결과를 중소기업 범위로 가공, 재편하여 중소기업 일반현황에 대한 통계를 제공하고 있음(전국사업체조사 관련 세부사항은 붙임자료 3 참고).

라. 종합의견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2016년에 폐지됨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함.

-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매년 전국단위로 중소기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지역적·산업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는 부족함이 있으며 중소기업육성계획의 수립시에 서울시 차원에서 특정분야에 대한 현황이 요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됨.
 - 중소벤처기업부의 2017년 실태조사에서 조사대상은 22,000개(일반항목 4,000개, 제조업 7,500개, 건설업 1,500개, 서비스업 9,000개)로 그중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은 3,200여개(14.5%)에 불과하여 실태조사의 결과를 서울시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특히 중소기업에 관한 통계와 실태조사의 결과가 특성상 조사 시점보다 일정시간 이후에 발표된다는 측면에서 즉각적인 현황 파악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본 개정안 제7조 제5항은 서울시 중소기업 정책과 지원사업의 효과성과 현장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2016년 12월 31일 기점으로 하는 통계와 실태조사의 결과가 2017년 12월말에 발표되어 실제 결과가 활용되는 시점과 약 2년의 시차가 발생하고 있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생략」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맹진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95
----------	------

발의년월일 : 2018년 2월 22일

발 의 자 : 맹진영, 유 용, 김영한,
문형주, 김구현, 문영민,
최관술, 신건택, 강구덕,
박호근 의원(10명)

1. 제안이유

- 조례에 인용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폐지됨에 따라 근거 법령을 최신화하고 중소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전에 관내 중소기업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여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중소기업의 육성 계획의 현실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폐지됨에 따라 인용법령에서 이를 삭제함(제1조)
- 나. 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전에 관내 중소기업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2항,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를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 제1항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로 하고 제7조제5항을 제7조제6항으로 하고 제7조제5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 ⑤ 시장은 시책 및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현황 및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2항,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창업·발전을 지원 및 육성하고 아울러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 (목적) -----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2항-----</p>
<p>제7조(중소기업시책 및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매년 12월 31일 까지 차기연도를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계획(이하 “시책 및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 ④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7조(중소기업시책 및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p> <p>-----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p> <p>-----</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⑤ <u>시장은 시책 및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현황 및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p>
<p>⑤ 시장은 제1항의 시책 및 육성계획이 최종 확정되는 즉시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p>	<p>⑥ 시장은 제1항의 시책 및 육성계획이 최종 확정되는 즉시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p>

○ 실태조사비 ≙ 1,010,000천원

- 실태조사비 = $\sum_{i=1}^5 (\text{연간비용})_i$

i = 비용추계 연차(2019년~2023년)

- 연간비용 ≙ 202,000천원

- 실태조사비 : 929,000천원 × 21.7% = 202,000천원

※백만원 단위로 반올림

- 중앙정부 중소기업 2018년 실태조사비 = 929,000천원

※중소벤처기업부 정책분석과 조사 자료

- 서울시 중소기업체 비율 = 21.7%

전국중소기업수(A)	서울시 중소기업(B)	비율(B/A)
3,542,350	767,399	21.7%

주 : 2016년 자료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통계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예산분석관 이정수

☎ 02-3705-1280

e-mail : intezer@seoul.go.kr